

신상공개제도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계층 요인과 인권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강 상 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국문초록

인권 사회를 만드는 핵심 기제는 시민에게 내재된 인권 요인이기에 민주주의 국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차원의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갖는다. 인권 관련 인식과 태도 등의 요인에 관한 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며 대표적 이슈가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인권위원회 제4차 인권 의식실태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12,198명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카이검정에 기반한 기술통계,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학력, 고소득 집단일수록 신상공개 찬성에 대한 비율이 전체 인구집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존중의식이 높은 집단에서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상공개에 찬성을 하지만, 인권존중의식이 높아질수록 신상공개에 반대를 한다. 이에 따른 사회적 함의는 보편적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도있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주제어 ■ 신상공개제도, 인권, 인권존중의식, 인권교육,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 ks9629@mail.knou.ac.kr

1 서론

2023년 10월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다. 국가·사회·개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특정 중대범죄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가 성폭력 범죄 등을 중심으로 공개대상이 한정되었다면 2024년부터 시행된 법률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영역을 대폭 확대하였다.

신상공개의 목적은 범죄를 범할 경우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요인을 통해 범죄예방의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강동욱, 2019)과 공권력 행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통해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 파악을 권리화하여 이를 보장하는 한다는 것(강서영, 2021) 등 범죄예방과 알권리 보장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견 역시 강하게 제시된다. 첫째는 신상공개제도 도입 논의의 중심이었던 성범죄가 실제적으로 감소하였는가에 대한 증거가 어려워 범죄예방 수단으로써의 적합성을 갖추었는가 둘째, 재범 위험성 등에 대한 어떠한 고려 없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어 인권 침해의 최소성 요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 셋째, 신상공개대상자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는데 반해 범죄억지 효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잃고 있다는 것 등이다(문재완, 2024). 이런 측면에서 신상공개제도의 ‘원조국’인 미국에서도 ‘신상공개 무용

론'이 제기되고 있다. 신상공개와 같은 '낙인찍기'가 범죄자의 '갱생 의지'를 꺾어 범죄에 대한 억제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그들의 재범률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경렬, 202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의 이면에는 국가의 사법 체계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중심에 있다. 사법체계를 불신하는 대중이 사법적 처벌 외에 징벌적 수단으로 신상공개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YTN, 2024.06.07.). 현재처럼 정부의 범죄예방과 관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낮아지고(한국리서치, 2023), 사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신상정보 공개를 활용한 사적제재가 계속해서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더 나아가 영리를 추구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의해 관련 정보가 확대 재생산될 때 피의자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가족 및 지인, 나아가 피해자 등에 대한 2차 가해 발생의 우려 역시 제기된다(강상준, 양혜정, 2024).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 논란과 비판에 기반한 논쟁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지만,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공개제도 도입과 법률 제정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발전하였다. 그러나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제도의 목적성보다 '피의자의 신상에 대한 공개'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이슈화되는 경향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인식과 사건 자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박서하, 김은중, 노성국, 2022). 대표적 사례가 <디지털 교

도소> 사이트의 등장이었다. ‘대한민국의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껴 악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고, 신상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고 한다’며 신상정보를 공개하였다(권태상, 2020).

도덕성의 집합체인 사회라는 구조에서 범죄에 대한 형벌 부과는 공공적 형식의 복수 또는 범죄 억지를 위한 공인된 고통의 부과라는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회적·법률적·제도적 방식이다. 핵심에는 형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요구됨과 동시에 사회통합이라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김도현, 2014).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대중의 인식이 여론으로 작용하거나 언론에 의해 증폭되어 가공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범죄 행위의 반사회적 가치’와 ‘범죄인이라는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무가치’가 혼동되거나 혼재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대상자를 독자적 인격의 주체로서 인정하기 보다는 범죄행위의 단죄를 위한 대중적 전시(展示)에 이용한다. 대상자를 범죄퇴치수단으로 취급하고, 범죄행위만이 아니라 범죄인 본인까지 악으로 규정짓고 사회에서 근절할 대상으로 삼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를 배척하는 것이라 비판받는다(권태상, 2020). 총체적 측면의 인간이 지닌 인권은 외면되고, 개인의 부정적 측면만이 부각되어 공동체에서 인격을 발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심각하게 훼손되기도 한다.

에밀 뒤르캠(2008)은 ‘인류로부터 그를 제외할 만큼 희망을 포기할 권리가 우리에게겐 없다’라고 하며 개인의 인격과 자율성의 전적인 파괴를 사회가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인간

존엄의 보편성 측면에서 바라보면 큰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에 대응되는 어떠한 형벌도 인간으로서의 본질적 가치를 파괴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김도현, 2014).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범죄자 역시도 같은 인간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은 누구에게나 천부성, 보편성, 불가침성 그리고 항구성이라는 기본적 성격을 지닌다. 반면 위험에 대한 불안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때보다 커져 가고 있다. 이에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고 안전을 해치는 중범죄에 대해 자유형(교도소)이 부과되어 자유의 박탈(거주이전의 자유)로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서 일정 기간 제한을 가하여 사회적 가치와 안전을 지키고 도덕성의 집합체인 사회의 통합을 유지한다. 그러나 신상공개에 의한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는 제도적 ‘자유박탈’을 초과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김도현, 2014). 정치와 언론이 과도한 포퓰리즘과 결합하여 대중요법적 과잉 형벌을 생산하면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체계가 오히려 인권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비판을 받는다(김지예, 2016). 국민의 알권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에서 96.3%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찬성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 그 사례이다(법무부, 2023). 본 조사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언급하며 현행 신상공개 제도의 한계를 강조하면서 신상공개 찬반에 단순 응답하도록 하였다. 다분히 응답자의 대다수가 찬성할 것이 예상

된 질문이며 절대 다수의 찬성 의견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법률 제정에 대한 여론 분석으로 제시하기에 근거가 빈약하다(강상준, 양혜정, 2024).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신상공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는 비판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예상되는 사안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내재된 여러 문제에 대해 학문적 접근과 사회적 논의가 더욱 심도있고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민주주의의 국가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차원의 인권 정책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높이고 있다(서재호, 이정훈, 2018). 즉, 인권 사회를 만드는 핵심의 기제는 시민에게 내재된 인권 관련 요인 등이다. 이는 인권 관련 인식과 태도 등으로 상징되며 인권을 인지하고 존중하며 실천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울러 인권이 침해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고 공유하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지와 행동 등도 포괄한다(Dunbar, Blanco, Sullaway, & Horcajo, 2004). 인권을 둘러싼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 개인들이 표명하는 인권 관련 인식과 태도가 다양하므로 인권정책과 제도의 추진에 있어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시민들이 지니는 인권 관련 인식이나 태도 등의 요인들에 대한 분석 필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다.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내의 학문적 접근을 살펴보면,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실효성, 피의자의 인격권 침해,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배, 인권 및 법 규범 문제, 제도의 효과성과 위협

성(권태상, 2020; 김혜미, 2024; 박경규, 2023; 박찬걸, 정관진, 2019; 황정영, 2023), 정보 유포 및 악용에 관한 제재 조치 및 법률 개정 방안에 관한 논의(박경규, 2023; 정동혁, 이관희, 손금주, 유광재, 이상진, 2024) 등이 주를 이루며 연구 분야 역시 법철학과 형법 등 법학 영역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반면, 신상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는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남성 직장인의 인지도 및 태도를 조사한 연구(장승옥, 배미향, 2002),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함께 개인의 가치 지향 등을 기반으로 신상공개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석한 연구(신현주, 2010), 온라인 여론 데이터를 활용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박서하 외, 2022)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에 대중영합주의가 배경에 흐른다는 비판적 측면에서 시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말이다.

인권 증진을 위한, 인권 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적 토론과 합의에 있어서 학문적 탐구에 기반한 논거들이 풍부하다는 것은 다양하고 심도있는 논의의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인권 관련 요인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찬성과 반대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것이다. 특정 인구 집단이 지닌 성별, 나이,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징은 중대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사회적 태도를 형성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강상준, 2022). 아울러 개인이나 집단이 지닌 인권 관련 요인 역시 구체

적 상황에서 사회통합 혹은 갈등의 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신상공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권적 측면에서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발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및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해 양립되는 인식과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고 인권 보편성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논의

1.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논쟁

신상공개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및 직장 소재지, 신체정보(키와 몸무게)와 사진 등의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강성두, 2010).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처벌의 확실성과 처벌의 엄격성이라는 두 가지 요인을 신상공개와 관련된 중요 변수로 제시한다. 처벌의 확실성은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 여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처벌의 엄격성은 어느 수준으로 처벌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문재완, 2024). 이러한 요인들이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잠재적 범죄자 혹은 일반인들에게 심리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여 범죄가 예방되도록 일정 수준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강동욱, 2019; 김혜미 2024).

신상이 공개된다는 점으로 인해 이를 두려워하여 범죄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죄예방의 효과가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신상공개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함으로써 그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 범위를 벗어난 처벌로 인해 적개심을 키우거나 형 집행 후의 사회복귀나 재사회화를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 역시 제기된다(강동욱, 2009). 이에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학계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범 방지나 범죄예방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과 이 같은 효과를 입증할 수 없다는 입장, 공익의 우월성에 근거해 신상공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권적 측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및 그 가족들의 인권까지도 심대하게 침해한다는 입장 등 상호 대립적인 주장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김혜미, 2024; 문재완, 2024; 장재성, 2019).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범죄예방과 국민의 알 권리, 자신의 얼굴이 공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두려움 등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핵심의 주장으로 한다. 대중의 관심이 쏠린 피의자는 공인(public figure)으로 취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보통 사람이 누리고 있는 프라이버시를 인정받을 수 없고 얼굴을 공개함으로써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된 내용이다. 이면에는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신상정보 공개는 타당하며, 다수 국민들과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강동욱, 2019).

신상공개제도를 반대하는 측의 주된 주장은 신상공개가 사실상의 유죄로 취급되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것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은 국정이나 정책 운영 등에서 발생한 공적 정보에 한하므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알권리가 적용된다는 것은 일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강동욱, 2009; 유일상, 2003). 이처럼 신상공개에 대한 여러 주장들이 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피의자의 인권보다는 범죄예방과 알권리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회적 흐름이다(노규호, 2009; 염건령, 2009).

신상공개는 사실상 명예형 또는 수치형적 속성을 갖고 있어 삶에 영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자체로 강한 제재적 처분의 성격을 지닌다. 개인의 인격에 단순 효과 이상으로 중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은 분명하다(김혜미, 2024). 아울러 대중들에게 신상이 공개됨으로 인해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존재한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도 피의자와 그 가족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가족, 친지, 친구 등에게까지 그 피해가 확대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장재성, 2019; 정철호, 2012). 신상공개가 피해자의 감정을 일부 달래주는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피해자의 직접적인 인권 보장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것, 만약 피해자나 그 가족에 대한 인권 보장을 우선시한다면 국가나 사회에 의한 실질적 보상과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강동욱, 2019).

그럼에도 결국 국가는 신상공개제도의 도입을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정책 실행은 흉악범에게 화난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방편이자 수단이라는 주장이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반해 제기된다(강상준, 양혜정, 2024; 장재성, 2019).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관련된 여러 조사에서 일반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찬성한다. 2016년 리얼미터가 성인 53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신상공개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는 8.7%에 불과하였다. 2018년 인데이터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참여자 999명 중 95.9%가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동의하였으며 반대 의견은 2.6%에 그쳤다(장재성, 2019). 그러나 막상 이러한 일반의 여론과는 달리 2021년 8월 경찰청인권위원회는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 개선안에서 ‘일반예방 측면에서 국내외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시행된 피의자 신상공개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나아졌음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나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 제도의 도입과 시행에 객관적 근거보다는 국민의 여론과 감정이 결정적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은 높아졌고 그때마다 찬성과 반대의 논쟁이 제시되지만 보편적 인권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신상공

개제도가 인권의 보편성 확립을 위한 노력의 차원보다는 국가 사법체계 불신에 기반한 여론의 방향성을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 내지는 대중의 분노를 일시적으로 해소하거나 국가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인으로 제도가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강동욱, 2009)가 일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2.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증적 접근

신상공개제도와 같은 민감한 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해당 정책의 성격, 달성 여부 등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시민들의 선호가 정책 행위의 선행요건이면서도 예측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선호여부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려는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신현주, 2010).

신상공개처럼 인권적 측면이 다루어지는 제도의 경우에는 학문적 연구의 범위가 규범적 접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인권의 도덕성과 당위성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인권의 향유자인 개인들이 인권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자신을 둘러싼 인권상황, 타인에게 적용되는 인권상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다양한 측면으로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상황 평가에 대한 조사는 꾸준히 이루어졌지만, 이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된 사회과학적 연구 역시 매우 드물다. 이에 시민들의 인권 의식에 대해 사회과학적 연구를 통

한 심도있는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곽귀병, 김대욱, 조흥진, 2018). 이는 신상공개제도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피해자와 가해자, 그 가족 및 지인의 인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음에도 실증적으로 연구되지 못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는 한계와 정책의 공백을 지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보장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대중들이 신상공개와 같은 민감한 정책적 사안에서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인권 규범의 확산 및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대해 일차적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인권 규범의 확산 및 개선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나은 방식의 인권 실천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인권 관련 요인들이 어떻게 상관성을 지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국가에 가해지는 압력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사회집단들의 기호나 선호가 정책에 반영된다. 이때 작동하는 기본적 영향 요인이 개인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배경이다. 신상공개와 같은 민감한 정책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상공개정책에 대한 선호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개인의 가치 지향 등 개인이 가진 특성과 관련된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신현주, 2010).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적 지위나 계층 요인에 따

라 입장과 태도가 결정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신상공개제도의 거의 유일한 실증 연구인 신현주(2010)의 연구에서 제시한 후속연구의 방향성이다. 이 연구는 219명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표본의 숫자를 더 늘려 대표성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변수 선택과 설문 문항 설계의 타당성 등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그러나 후속 연구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기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의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전국 단위 데이터를 다루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 자료는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기에 자료의 타당성과 집단의 대표성을 담보해 낼 수 있다.

정책결정자들은 특정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의 만족 수준을 반드시 고려한다. 이때 시민여론은 척도가 된다. 한국 사회처럼 세대, 지역, 계층이라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거의 모든 정책에 있어서 기본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환경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연구방법이다. 그러나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규범적·법률적 근거에 대한 이론 부분에 치중하고 있고 실증 연구는 전무하다(곽귀병 외, 2018).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신상공개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의 결과물들을 축적시킨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가 지닌 의미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성별의 차이는 존재하는가? 사회경제적 지위는 신상공개제도의 찬성과 반

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교육을 많이 받은 집단은 신상공개 제도에 대해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인권의식이 높으면 신상 공개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등의 질문이 실증 연구로써 본 연구가 지니는 이론적 논의의 핵심이다. 이와같은 중요한 질문들이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제4차 인권의식실태조사」 자료이다. 「인권의식실태조사」는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국가승인통계로 2019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인권 관련 다양한 변수들을 포괄적으로 측정하여 국민들의 인권의식과 인권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한다. 4차 조사자료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9,043가구 16,148명을 표본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 관련 의견 조사 영역 중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 ↔ 반대한다’에 응답한 12,19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녀의 비율은 여성 53.8%, 남성 46.2%으로 여성이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을 보인다.

다.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37.2%, 50대 19.5%, 40대 18.0%, 30대 13.1%, 20대 12.3%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 분포는 대졸이 38.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고졸이 36.1%, 중졸 23.2%이며 대학원 이상이 2.4%로 가장 적은 분포를 보인다. 인권교육 경험은 88.2%가 인권교육 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11.8%가 인권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신상공개 찬반에 따른 집단 구분은 반대가 2.9%, 찬성이 97.1%의 분포를 보인다. 소득은 301만원~400만원 이하가 18.0%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고, 201~300만원 이하가 17.3%, 401~500만원 이하가 14.8%, 101~200만원 이하가 12.1%, 501~600만원 이하가 11.2%의 순으로 분포를 보인다. 이외 소득구간에 대한 분포 현황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2,198)

구분		n	%	구분		n	%
성 별	남성	5,623	46.2	소 득 구 간	100만원 이하	1,206	9.9
	여성	6,560	53.8		101~200	1,474	12.1
연 령 대	20대이하	1,494	12.3		201~300	2,112	17.3
	30대	1,594	13.1		301~400	2,199	18.0
	40대	2,187	18.0		401~500	1,797	14.8
	50대	2,370	19.5		501~600	1,359	11.2
	60대이상	4,538	37.2		601~700	851	7.0
학 력	중졸이하	2,827	23.2		701~800	424	3.5
	고졸	4,403	36.1		801~900	276	2.3
	대졸	4,665	38.3		901~1000	161	1.3
	대학원이상	288	2.4		1,000만원이상	324	2.7
인권 교육	경험있음	10,751	88.2		찬반 여부	신상공개반대	359
	경험없음	1,432	11.8	신상공개찬성		11,824	97.1

2.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종속변수인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반대한다’라는 이분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집단 간 차이검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김진석, 2010),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수가 이분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비선형 모형을 가정하고 확률에 자연로그를 취해 변환하여 사용하는 모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예측하는 모형이다(이소영, 윤지영, 최혜진, 2018). 아울러 신상공개 찬반에 대한 요인별 영향력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두 단계로 구분된 위계적 분석방법을 진행하였다. 위계적 분석방법은 종속변수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그 다음 영향력을 미치는 독립변수 간의 상대적 영향력 크기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기 때문이다(송지준, 2015). 1단계 분석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구간 등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투입하였고(Model 1), 2단계 분석에서는 인권 관련 요인인 인권교육유무와 인권존중의식 등의 변수를 투입하였다(Model 2). 자료분석을 위한 통계프로그램은 IBM SPSS Statistics 23을 사용하였다.

3. 연구도구

1) 신상공개 찬반

신상공개 변수는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과 얼굴을 공개하

는 것에 ‘찬성한다’ 4점부터 ‘반대한다’ 1점까지 4단계로 구분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신상과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에 높은 수준으로 찬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권교육유무

인권교육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변수는 인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할 것인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으로 지난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 ‘없다’와 ‘있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인권존중

인권존중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는 본인, 사회적 약자,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존중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파악하는 것을 담고 있다. 2021년 조사까지는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2022년부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어 총 3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존중된다’부터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까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분하였으며 높은 값이 나올수록 우리 사회에서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고 평가하는 인식을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00$ 로 나타났다.

4)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에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구간 등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재코딩하여 더미변수화 하였다.

4 연구결과

1. 집단간 차이검증

본 연구의 모형에 대한 검증 전 집단 간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구분에 따른 신상공개 찬반 비율은 남성이 반대 2.8%, 찬성 97.2%, 여성이 반대 3.1%, 찬성 96.9%로 신상공개 반대에 대한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3.2%로 60대 이하의 연령대보다 반대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 학력구분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 비율은 중졸이하(3.1%)와 고졸(3.6%)이 신상공개 반대의견에서 3% 이상을 보였고, 대졸(2.3%)과 대학원졸이상(1.7%)이 2% 수준 내외로 반대의견을 보이며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2> 카이검증 결과

집단구분		신상공개 찬반		χ ² (p)
		반대(n, %)	찬성(n, %)	
성별	남	155(2.8)	5,468(97.2)	1.321 (.250)
	여	204(3.1)	11,824(96.9)	
연령대	20대이하	38(2.5)	1,456(97.5)	2.069 (.723)
	30대	47(2.9)	1,547(97.1)	
	40대	61(2.8)	2,126(97.2)	
	50대	68(2.9)	2,302(97.1)	
	60대이상	145(3.2)	4,393(96.8)	
학력	중졸이하	89(3.1)	2,738(96.9)	16.095 (.001)
	고졸	159(3.6)	4,244(96.4)	
	대졸	106(2.3)	4,559(97.7)	
	대학원졸이상	5(1.7)	283(98.3)	
소득구간	100만원이하	31(2.6)	1,175(97.4)	23.274 (.010)
	101~200이하	45(3.1)	1,429(96.9)	
	201~300이하	75(3.6)	2,037(96.4)	
	301~400이하	60(2.7)	2,139(97.3)	
	401~500이하	57(3.2)	1,740(96.8)	
	501~600이하	52(3.8)	1,307(96.2)	
	601~700이하	18(2.1)	833(97.9)	
	701~800이하	1(0.2)	423(99.8)	
	801~900이하	5(1.8)	271(98.2)	
	901~1000이하	7(4.3)	154(95.7)	
1001만원이상	8(2.5)	316(97.5)		
인권교육	경험있음	29(2.0)	1,403(98.0)	4.819 (.028)
	경험없음	330(3.1)	10,421(96.9)	
인권존중인식 집단구분	평균이하	122(2.1)	5,788(97.9)	31.252 (.000)
	평균이상	237(3.8)	6,036(96.2)	

※ 신상공개제도 찬성반대 전체분포 : 찬성 11,824(97.1%) / 반대 359(2.9%)

※ 인권존중의식 평균 점수 : 2.7767(SD : 0.4367)

소득구간에서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년 3,454만원, 월 287.8만원)과 평균소득(년 3,936만원, 월 328만원)을 중심으로

한 분포 집단에서 반대의견이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소득의 양극단으로 갈수록 반대 의견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에 있어서는 받은 집단이 오히려 신상공개에 대해 찬성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인권존중 의식 수준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은 인권존중의식의 평균점(2.7767)을 기준으로 평균점 이상 집단과 평균점 이하 집단을 구분하여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집단 간 차이검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인권존중의식이 평균점 이상인 집단에서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의견(3.8%)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집단의 평균 분포(2.9%)보다 높은 비율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2. 모형검증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3>, <표 4>와 같다.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2Log 우도($-2 \text{ Log Likelihood: } -2LL$) 수치가 낮을수록 모형 적합도는 높은 것으로 간주되지만(이용, 2017), 본 연구모형에서 Model I 은 3228.832, Model II 는 3179.83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모형계수 전체 검증결과에서도 카이제곱의 유의확률이 Model I 은 $p=.060$, Model II 는 $p=.000$ 으로 Model II 만 모형의 적합도 측면에서 유의확률 $p<.05$ 에 부합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였다. 이에 Model II 만 채택되었으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Negelkerke의 R^2 값은 2.0%를 보이고 있다.

<표 3> 찬반 영향요인 결과

변수		Model1					
		B	SE	Wald	df	p	EXP(B)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84	.109	.586	1	.444	1.087
	연령	.015	.046	.106	1	.745	1.015
	학력	.201	.086	5.508	1	.019	1.223
	소득구간	-.004	.026	.020	1	.888	.996
-2		3228.832					
Model Chi Square(df)		9.057(4)					
유의확률		.060					
Cox와 Snell의 R ²		.001					
Nagelkerke의 R ²		.003					

성별더미 (남=0/여=1), 인권교육(유=1/무=0)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인 <표 4>에 기반하여 볼 때, 신상 공개 찬반 여부에 영향을 주는 예측 요인은 학력(.176)과 인권 존중의식(-.847)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 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고, 인권에 대한 존중 의식이 높을수록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의 가능성이 낮아짐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 X의 회귀계수 B가 EXP(B)로 변환되어 제시된다. 이는 변수 X를 1 증가시키면 얻어지는 종속변수의 승산 증가 배수로 해석된다. 따라서 EXP(B)를 승산비(odds ratio: OR)라고 한다(홍세희, 2019). 로지스틱 분석에서의 회귀계수와 승산비의 관계성에 기반해 살펴보면 학력요인과 인권존중의식 요인의 영향력은 다음과 같다.

종속변수인 신상공개에 대한 찬반여부에 독립변수인 학력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176이고 승산비 EXP(B)는 1.192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이 1단위 증가할 때 마다 ‘피의자의 신상공

개’에 대해 찬성할 확률이 19.2%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존중의식에 있어서는 로지스틱 회귀계수가 -.847로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인권존중의식이 1단계 상승할때마다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해 반대할 확률이 73.3%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성별, 연령, 소득구간 등의 요인은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력 역시 Model I의 경우처럼 인구사회학적 특징만으로는 영향 요인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권관련 요인을 함께 투입하는 모형(Model II)에서는 영향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즉, 학력 요인은 인권존중의식 요인과 결합될 때 신상공개의 찬성과 반대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

<표 4> 찬반 영향요인 결과

변수		Model2					
		B	SE	Wald	df	P	EXP(B)
인구 사회학적 요인	성별	.086	.110	.623	1	.430	1.090
	연령	.023	.046	.251	1	.616	1.023
	학력	.176	.087	4.126	1	.042	1.192
	소득구간	-.004	.027	.020	1	.887	.996
인권적 요인	인권교육유무	-.310	.202	2.347	1	.126	.733
	인권존중인식	-.847	.125	46.147	1	.000	.429
-2		3179.835					
Model Chi Squire(df)		48.997(6)					
유의확률		.000					
Cox와 Snell의 R ²		.005					
Nagelkerke의 R ²		.020					

성별더미 (남=0/여=1), 인권교육(유=1/무=0)

5 논의 및 결론

1. 논의

인권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개인들이 표명하는 인권 인식과 태도는 다양하기에 인권정책과 제도 추진에서 난관에 부딪히기도 한다. 인권 관련 인식이나 태도 등의 요인들에 관한 분석 필요성이 간과 되어서는 안되는 이유이며 대표적 이슈가 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여론이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 대중영합주의가 배경에 흐른다는 비판 등이 다양하게 부각되었음에도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신상공개제도 도입과 법률 제정에 대한 사항은 여론의 지지를 얻고 발전하였다. 이는 성별과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넘어 전체 대중이 국가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징벌적 수단으로 신상공개를 지지하기 때문이다.

대중의 인식이 여론으로 작용하여 ‘범죄 행위의 반사회적 가치’와 ‘범죄인이라는 인간의 인권에 대한 무가치’가 혼동되거나 혼재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여기에 덧붙여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및 지인의 인권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논쟁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실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회적 합의 도출의 한계에 대한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 보장

의 실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신상공개와 같은 민감한 정책적 사안에서 시민들이 인권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탐구가 요구된다. 인권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인권 규범의 확산 및 인권상황 개선 노력에 대해 일차적 평가의 성격을 지니고, 인권 규범의 확산 및 개선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계 맺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 나은 방식의 인권 실천을 위해서라도 신상공개와 같은 민감한 사회적 이슈와 인권 관련 요인들이 어떻게 상관성을 지니는지 탐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권적 측면에서 보편적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양립되는 인식과 갈등을 해소하고 인권 보편성에 대한 정당화 과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른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적 요인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등의 인구학적 집단 구분에서는 남성 집단, 여성 집단 모두 전체 인구집단과 동일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연령대별 집단에서도 20·30대의 청년집단, 40·50대의 중장년 집단, 60대 이상의 인구집단 모두 전체 인구집단과 동일한 집단적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학력과 소득이라는 사회·경제적 요인에서는 명확하게 집단별 차이가 드러나고 있음이 보였다. 고학력, 고소득 집단일수록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반대의 비율이 줄어들어 찬성에 대한 비율이 전체 인구 집단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권적 요인에 따른 집단 구분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집단이 인권교육 경험이 없는 집단보다 신

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집단의 평균 비율보다 현격히 높다. 그러나 인권존중의식에 따른 집단 구분에서는 인권존중의식이 높은 집단에서 신상공개제도를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관련 요인임에도 인권교육의 경험 유무와 인권존중의식이 신상공개제도 찬반 의견에서는 상반된 경향성을 집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존 인권관련 실증연구(양혜정, 강상준, 2024)에서는 인권교육 요인이 인권존중의식, 인권태도 등의 요인과 동일한(+) 상관성을 보이고 있으나 신상공개제도라는 이슈에서는 반대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작동하는 별도의 내재적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구모형에 따른 요인별 영향 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소득 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만을 투입할 경우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인권관련 요인을 동시에 투입할 경우에는 학력과 인권존중의식이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두 요인이 상호 반대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상공개에 찬성을 하지만, 인권존중의식이 높아질수록 신상공개에 반대를 한다. 이와같은 상반된 부(-)적 영향력은 여타의 인권관련 실증연구(양혜정, 강상준, 2024; 정원주, 2008)에서 학력과 인권의식이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는 반대의 경향성이다. 인권 이슈에서 학력은 인권존중의식, 인권감수성과 동일한 상관성을 갖고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좀 더 민감한

사회적 이슈인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만큼은 반대의 상관성을 보이고 서로의 영향력을 상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결론

인간성은 인간 본성의 목적이며(헤르더, 2002) 이에 대한 인정과 보장을 개념화 시킨 것이 인권이다. 인간이라는 존재에 내재된 자연의 법칙은 ‘인간성’ 그 자체이며 인간 속의 인간성보다 더 고귀한 것을 찾을 수는 없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 등이 시민들의 인권에 어떠한 영향성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여 예측하고자 노력한다. 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수단이나 도구로써 보다 그 자체에 내재된 철학과 가치에 본질적 의미가 있다. 특히 인권 관련 제도와 사회적 환경은 사회정책의 핵심 요인이기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인권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인권 수준 향상과 인권 정책 방향성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권실태조사 자료에 기초한 실증 분석 연구는 미비한 수준이다. 인권 논의에 한계로 작용할 것이 예상되는 부정적 요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사회 인권 인식과 다양한 인권 의견을 파악하여 인권 증진 정책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지지 여론은 성별과 연령을 초월하여 모두 동일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와같은 현상의 기본 바탕에는 현재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다. 사법

체계의 기본 목적은 모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역할과 정책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특히 고학력 고소득 집단일수록 신상공개에 대한 지지가 높게 나타난다. 고학력 고소득 집단일수록 현재의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의 정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불신 여론을, 큰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신상공개에 대한 논의 보다는 제도화를 위한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경향성을 강하게 내비쳤다. 그로인해 ‘인권의 보편성’ 담론이 수면 밑으로 내려앉거나 간과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인권 보장을 위한 본질적·구조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과정이 진행되지 못함은 물론, 오히려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2차 가해 및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면적으로 신상공개라는 사회적 이슈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구나 안전한 사회적 구조, 보편적 인권이 보장될수록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징적 결과가 고학력, 고소득, (직장내에서의 법정 의무교육들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한 집단에서 신상공개를 더 많이 찬성하는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반면 간과해서는 안될 결과가 인권존중의식 즉 인권감수성이 높을수록 신상공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즉 학력이 높다고 인권존중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지는 않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 (법정의무교육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이수했다는 것이 인권존중의식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핵심은 결국 ‘국가와 정부의 역할이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첫째는 안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구조적·정책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는 그 어떤 누구의 인권도 상대적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되며,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이러한 구조적 여건과 사회적 환경하에서 인권의 보장과 인권의 확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자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실태조사자료가 폭넓은 인구집단을 조사한 자료로 대표되지만, 연구결과를 전체로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022년이라는 특정한 시점을 시간적 특성으로 하고 있기에 신상공개에 대한 국민 여론의 시계열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의 제한점들을 보완하여 추후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아울러 신상공개 찬성과 반대에 대한 영향 요인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인권교육 여부, 인권존중의식 등에만 국한하였기에 엄격한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향후 이와같은 연구의 한계점들을 보완하여 여러 요인들이 보완된 자료를 바탕으로 후속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논문 투 고 일: 2024.12.29
- 심 사 완 료 일: 2025.01.24
- 게 재 확 정 일: 2025.01.24

참고문헌

- 강동욱 (2009). “강력범죄피의자 신상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한양법학』, 제26권, 145-161.
- 강동욱 (2019).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 『비교법연구』, 제19권 3호, 7-47.
- 강상준 (2022). “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는 복지 확대와 축소 중 무엇을 선택하였는가?”, 『사회보장연구』, 제38권 3호, 327-354.
- 강상준·양혜정. (2024). “인권 증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범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의견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인권 인식의 매개효과”, 『Crisisonomy』, 제20권 11호, 119-129.
- 강서영 (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실무 2021-A-1). 서울: 헌법재판연구원.
- 강성두 (2010). “범죄피의자의 인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피의자 신상공개규정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민사법연구』, 제18권, 371-390.
- 곽귀병·김대욱·조홍진 (2018). “사람들은 어떻게 인권을 평가하는가?: 인권지표, 민주주의 인식, 사회경제적 지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52권 1호, 117-151.
- 권태상 (202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2호, 43-79.
- 김도현 (2014). “사회적 불승인으로서의 형벌: 에밀 뒤르켐의 적극적 일반예방론”, 『법과 사회』, 제47권, 153-187.
- 김지예 (2016). “언론보도가 형사입법에 미치는 영향 연구: 형사입법의 엄벌화 경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석 (2010). “청소년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요인의 관계”, 『한국아동복지학』, 제37권, 165-185.

- 김혜미 (2024). “스토킹범죄의 성립범위상 문제점과 입법 개선 방안의 검토-미국 스톱킹법의 위헌성 논쟁과 비교하여”, 『저스티스』, 제204권, 144-177.
- 노규호 (2009). “흉악범 얼굴공개와 필요성과 논의점”, 『수사연구』, 제305호, 12-19.
- 문재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얼굴 사진 공개를 중심으로”, 『외법논집』, 제48권 1호, 353-376.
- 박경규 (2023).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와 범죄자 인격권 보호 ②”, 『언론중재』, 제167호, 52-59.
- 박서하·김은정·노승국 (2022).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온라인 여론 데이터를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제36권 2호, 93-126.
- 박찬걸·정광진 (2019).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 제31권 3호, 33-55.
- 법무부 (2023). 보도자료 :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천: 법무부.
- 서재호·이정훈 (2018). “지방자치단체 인권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지방행정연구』, 제32권 4호, 165-192.
- 송지준 (2015). 『SPSS/AMOS 통계분석방법』. 파주: 21세기사.
- 신현주 (2010).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의 정책 선호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5권, 111-142.
- 양혜정·강상준 (2024). “인권교육 경험과 인권의식, 인권태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제46권 2호, 199-210.
- 에밀 뒤르켐 저·황보중우 역·이시형 감수 (2008). 『자살론』. 파주: 청아출판사.

- 염건령 (2009). “흉악범 얼굴공개에의 필요성과 근거”, 『수사연구』 제305호, 39면.
- 유일상 (2003). “국민의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의 갈등과 조정 방안”,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68-199.
- 이경렬 (202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범죄인의 잊혀질 권리”, 『성균관법학』, 제33권 2호, 297-350.
- 이소영·윤지영·최혜진 (2018). “노인복지관의 역할 인식과 재이용 의사 : 경기도 N시 노인복지관 인근 지역 거주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3권 4호, 251-264.
- 이용 (2017). “병역유형별 합리성 인식에 따른 병역제도 개선방안 연구: 이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제60권 2호, 139-164.
- 이혜환·정지수 (2019). “강력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판단기준 분석과 정책변동론의 적용”, 『경찰학연구』, 제19권 3호, 9-38.
- 장승욱·배미향 (2002).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직장인 남성의 인지도와 태도”, 『한국사회과학연구』, 제21권 1호, 19-44.
- 장재성 (2019).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법적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21권 4호, 193-216.
- 정동혁·이관희·손금주·유광재·이상진 (2024).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시에 관한 연구”, 『형사법의 신동향』, 제83권, 282-315.
- 정원주 (2008). “보육교사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가인권상황 지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제12권 4호, 167-187.
- 정철호 (2012).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 7호, 156-168.

- 한국리서치 (2023). [2023 범죄인식조사] 우리 사회는 범죄로부터 안전한가?.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247(3).
- 홍세희 (2019). 『이항 및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 파주: 교육과학사.
- 황정용 (2023). “피의자 신상정보 중 얼굴 공개에 관한 연구 - 피의자 신상공개의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 『범죄수사학연구』, 제9권 2호, 119-138.
- 헤르더 저·강성우 역 (2002).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서울: 책세상문고.
- YTN (2024. 06. 07.). “밀양 사건 조회수 경쟁, 2차 가해 지적”
- Dunbar, E., Blanco, A., Sullaway, M., & Horcajo, J. (2004). Human rights and ethnic attitudes in Spain: The role of cognitive, social status, and individual difference factor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9(2), 106-117.

ABSTRACT

An Empirical Analysis Study on Class Factors and Human Rights Factors that Influence Support and Opposition to the System of Public Disclosure of Suspect Information

Kang, Sangjun

Dept. of Social Welfare
KNOU

The core mechanism for creating a human rights society is the inherent human rights factor in citizens, so democratic countries are interested in establishing human rights policies that citizens can feel. This is why an academic approach to factors such as human rights-related awareness and attitudes is necessary, and a representative issue is public opinion for and against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ed an empirical analysis of 12,198 people based on the data from the 4th Human Rights Awareness Survey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Descriptive statistics based on chi-square test and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support and opposition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and the discussion content is as follows.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and the higher the income, the higher the rate of support fo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compared to the average of the entire population group.

However, the group with high respect for human rights was found to be oppos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s a result, the higher the education level, the more support for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but the higher the respect for human rights, the more opposition to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The social implications of this suggest that there is a need for more in-depth social discussions to ensure universal human rights.

| **Key Words** |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uman rights, human rights respect awareness, human rights education,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